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10일 15시 06분



목차

목차	2
민방위훈련안내	3
제385차(8월18일)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통보	3

제도안내	연혁	남북방위제도비교	교육장오시는길
민방위대편성절차안내	민방위훈련안내		

제385차(8월18일)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통보

2011.08.05 조회수 1356 등록자 강대만

□ 훈련내용

- 훈련근거 : 「민방위기본법」제25조
- 훈련시간 : 2011. 8. 18. 14:00~14:20 (을지연습 3일차)
- 대상지역 : 24개 읍·동지역(※ 경보시설이 있는 면지역 포함)
- ※ 제외지역(남면, 화정면, 삼산면)
- 훈련절차 : 훈련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실제대피 및 교통통제
공습경보(15분) 경계경보(5분) 경보해제
- 경보발령 :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주관 전국 취명
- * 경보시설이 없는 지역은 마을앰프, 지휘용 앰프 등을 활용
-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, 비상차량 기동훈련

□ 훈련유도 활동 강화

- 여수시, 공공기관의 주민대피 유도활동
 - 실과소 전 직원 : 행정담당 책임지역별로 참여하여 유도활동
 - ※ 유도활동 지원인력은 해당 읍·동으로부터 사전에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
 - 각급기관 : 기관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등 적극 지원
- 민방위대원의 훈련참여
 -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의 훈련참여 협조요청(2~4년차)
 - ※ 민방위 기본교육 미 참석자에 대해서 훈련 자율참여 유도
- 자원봉사단체의 자율참여 유도
 - 새마을, 바르게살기, 한국자유총연맹, 의용소방대, 자율방범대, 해병전우회, 적십자회 등 자원봉사조직 활용
- 유도요원 주민대피 유도활동 행동요령
 - 유도요원은 당일 13:00까지 현장 도착
 - 신호봉, 호루라기, 어깨띠, 완장, 등 착용 및 방독면 지참
 - ※ 모든 장비는 해당 읍·동에 반드시 반납할 것(읍·동에서는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)
 - 보행중인 주민은 인근 대피소로 실제 대피 유도
 - 차량은 갓길 정차 유도(차내에서 방송청취), 비상차로(1차로) 확보

이전글

2011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계획 및 일정 통보

다음글

2011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통보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